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03. 1. 15 동두천시장이 제출

나. 회부일자 : 2003. 1. 15

다. 상정일자 : 제124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설명, 질의답변

제6차 본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읍면동 기능전환의 실시와 관련한 한시기구인 주민자치지원단의 운영시한이 당초 200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나 기능전환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 승인되어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한시기구인 「주민자치지원단」의 존속시한을 1년 6월 연장함.

. 존속기한 : 당초 2002. 12. 31 ⇒ 변경 2004. 6. 30일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본 개정조례안은 2002. 12. 3일자 행정자치부가 시·군에 시달한 읍·면·동 기능전환 한시기구 정원에 관한 연장승인지침에 의거 현재 한시기구로 운영중인 시·군 주민자치지원단의 운영시한이 당초 200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삶과 질 향상을 높이고 각동 기능전환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한시기구로 운영중인 「주민자치지원단」의 존속시한을 2004년 6월 30일까지 1년 6개월 연장하려는 조례개정 내용으로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